

의안번호	2220972
의 퇴 인	이언주 의원
회 답 일	2026. 9. 22.
추 계 번호	26F44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전략품목 국내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35 (전략품목 국내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)	○ 전략품목의 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품목의 판매 량에 비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 공제 신설 － 전략품목: 녹색전환, 경제안보, 공급망 안정 및 국내 생산기반의 유지 확충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및 전기자동차 － 공제액 산정방식: 전략품목의 판매·수출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 등을 적용하여 산정 ※ 수도권 외의 지역 생산시 기준공제액에 1~1.5의 지역별 계수 적용 ※ 2034년 이후 기준공제액에 점감구조 적용: (’34년) 75%, (’35년) 50%, (’36년) 25% ※ 전기자동차의 경우, 차량용도, 에너지 등에 따라 대당 최대 400만원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적용 － 전략품목의 범위, 국내 판매 및 수출 요건, 생산· 판매·수출량 산정방식, 생산자 판정 등은 대통령령 으로 규정 － 적용기한: 2036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0조의35 (전략품목 국내생산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품목의 판매 및 수출량에 비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0조의35 신설 등)

○ 개정안은 전략품목의 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전략품목의 판매·수출량에 비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
－ 전략품목: 녹색전환, 경제안보, 공급망 안정 및 국내 생산기반의 유지 확충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및 전기자동차

－ 공제액 산정방식: 전기자동차와 그 외 제품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품목별 공제액에 지역별 계수 및 연도별 점감구조 적용

① 전기자동차의 경우, 차량용도, 사용 에너지 등에 따라 해당 최대 400만원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적용

※ 구체적인 적용내용은 대통령령에 규정

② 전기자동차 외 전략품목의 경우, 대통령령에 규정된 품목당 공제액을 적용

※ 수도권 외의 지역 생산시 기준공제액에 1~1.5의 지역별 계수 적용

※ 2034년 이후 기준공제액에 점감구조 적용: ('34년) 75%, ('35년) 50%, ('36년) 25%

－ 이외에도 전략품목의 범위, 국내 판매 및 수출 요건, 생산·판매·수출량 산정방식, 다른 공제와의 중복배제, 생산자 판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
－ 적용기한: 2036.12.31.

※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미공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, 10년간 이월공제가 허용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략품목의 지역별 판매 및 수출량 등을 추정해야 하나, 전략품목 해당 여부 및 공제액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○ 개정안은 세부적인 전략품목 해당여부, 품목당 공제액 및 지역별 계수, 공제 요건, 생산·판매·수출량 산정방식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규모를 판별할 수 없음

－ 개정안의 전략품목은 전기자동차 외에 대상인 분야 등이 불분명하고, 세부적인 품목의 공제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시행령 규정이 미비하여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- 또한, 공제규모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품목당 공제액, 생산·판매·수출량 산정 방식, 공제요건의 세부적인 사항, 중복배제 대상인 공제제도 등도 관련 시행령 규정이 미비하여 현 시점에서 공제규모를 추정할 수 없음
- 개정안에 따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, 이월공제 특례에 따른 세수효과 등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